

● 제284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이영실 의원 발의]

의안번호 190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이영실 의원 발의(찬성의원 22명)
- 나. 제안일 : 2018. 10. 17.
- 다. 회부일 : 2018. 10.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인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조례의 제명을 바꿈으로써 한국수어발전 사용 환경에 대한 적극적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 「한국수화언어법」 제7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장의 매년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그 구체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명확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주요내용

- 1)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2)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로 신설함.(안 제5조제2항과 각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

-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2016년2월)되고 시행(2016년 8월)된 바, 서울시 차원의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한국수어 통역 활성화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수어의 사용촉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평등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 활성화를 넘어서 한국 수어 환경을 개선하여,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한국수어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조례상 명시하고, 이러한 입법적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도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2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2018년 9월 기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농인은 총 5만 2천여명으로, 농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어통역센터 운영사업, 농아인 컴퓨터 조성사업, 서울 수어전문교육원 운영사업,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 청각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등이 있음.(시설별 자료는 첨부자료 참조)

- 농인¹⁾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바, 결과적으로 교육·취업 및 일상생활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상당수가 사회적 소외 계층에 놓이게 된 실정임.
- 청각과 언어장애인인 농인은 관공서와 병원, 은행 등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화통역센터(25개 자치구마다 1개소 설치)를 이용하고 있으나, 전월세계약서 상담·경찰민원상담·야간진료상담·은행대출상담 등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휴일·야간 등에 발생할 경우 농인이 겪는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함.
-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수화언어 사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장의 계획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보장하려는 취지는 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임.
- 개정안 제5조는 수화언어법 제7조²⁾에 따른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것으로, 현행 조례가 시행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을 통해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수립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방향을 조례상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음.

1)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표-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신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u>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u> 2. <u>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u> 3. <u>농인인 시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u> 4. <u>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5. <u>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u> 6. <u>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u> 7. <u>농인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u> 8. <u>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u> ③ (현행과 같음)

○ 개정안에 따른 집행부의 관련 사업명은 다음 표(표-2)와 같은 바, 집행부는 개정안 자체에 대해 특별한 이견(異見)이 없다고 보임.

<표> 개정안 제5조

개정안 내용	서울시 관련 사업명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1. 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수어통역센터 운영 수어전문교육원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시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설정

2.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서울수어전문교육원에 ‘한국수어의 이해’ 강좌 개설	의견 없음
3. 농인인 시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의견 없음
4.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교육 및 행사 등에 통역지원	의견 없음
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공인 수어통역사 시험반 교육 및 전문영역 보수교육	의견 없음
6. 한국수어 관련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수어학술제, 수어통역사 의 날, 수어통역사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연수 : 연 1회	의견 없음
7. 농인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수어학술제 개최	의견 없음
8.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	수어교육 및 교재개발	의견 없음

3 결론

- 조례안은 농인(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촉구하고 이를 명시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집행부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 다만 집행부가 개정안(제5조제2항제1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수어 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시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설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서울시에서 장애인 관련 부서(장애인자립지원과)를 본 조례 제정안의 소관부서로 배정한 것은 상위법의 관리체계와 맞지 않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사료됨.

- 살펴보건데, 본 조례안의 관련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2016. 08. 04. 시행)은 한국수어를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라고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음.

<참고 사항>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7조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평가받도록 규정

※ 2013년에 국회에 4건의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³⁾이 제출(발의)되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 2016년 2월 대안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

-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한국수어를 국어와 같은 공식 언어로 인정한 것임.
-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한국수어를 장애인정책 차원에서 집행하는 방식보다는 언어문화환경 조성 차원에서 접근하여 농인(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자유권적 기본권 등을 비장애인과 아무런 차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화환경 조성 및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3) 국회 제출 수화언어 관련 법률안 :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3.08.20.) 「수화기본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3.10.08.), 「한국수어법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2013.10.22.),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2013.11.26.)

참고자료	서울시의 농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설 현황 및 집행 내역
------	---------------------------------

○ 지원사업

- 수어통역센터 운영 : 473,293건('18.9월말 기준)

(단위: 건)

계	상담(160,053)			통역 (157,978)											수어 교육	기타
	출장	내방	전화	내 방	출장					전화						
					행정 기관	교육 기관	의료 기관	법률 기관	일상 생활 등	행정 기관	교육 기관	의료 기관	법률 기관	일상 생활 등		
473,293	12,885	56,497	81,267	68	18,510	6,616	8,859	38,788	1,350	13,666	25,987	7,342	503	6,919	961	42,489

- 자치구 민원실 파견 수어통역사(10개소, 총 10명) 실적:28,728건

· 파견 자치구: 종로, 노원, 은평, 마포, 강서, 양천, 관악, 서초, 구로, 도봉구

(‘18. 9월말 기준)

계	상담	통역	행사 및 교육
28,728건	28,301	4,187	11,784

- 농아인 쉼터 조성 : 7개소(조성중 2개소)

· 대상 자치구 :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 성북구, 양천구, 강동구(12월), 은평구(12월)

· 인력배치 : 수어통역사 각 1명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 이용인원 : 5,722명('18. 9월말 기준)

· 일반 교육(단계별 수화), 자격증 대비, 자격자(전문영역 수화)보수 교육 등 실시

총계	단계별 수화교육 (기본 교육 과정)						공인수화 통역사시험		전문영역 수화교육						청각·언어 장애인 수화교육
									통역사 보수교육 영역			비 보수교육 영역			
	입문반	수어 트레이닝	회화반	고급반	수어 영상 독해반	수어 통역 실습반 (핵심반)	필기 대비반 (5월 개강)	실기 대비반	의학· 법률 수화반	정보통신· 방송통역 수화반	강사 양성반	국제 수어반	관용 수어반	수어 토크반	
5,722	817	875	799	643	497	509	418	678	2018년 한시적 미운영 (수요자 감소)			33	175	205	73

-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 이용인원 : 8,782명('18. 9월말 기준)
- 학습지도, 컴퓨터교육, 시험지원서비스, 수능화면 해설 방송물(EBS) 교재 제작·보급 등 실시

- 청각장애인복지관 운영 : 3개소(시립 1, 법인 2)

- 현황 : 서대문농아인복지관(시립), 삼성소리샘(법인), 청음회관(법인)
- 이용인원
 - ▶ 서대문농아인복지관 : 1일평균 382명
 - ▶ 삼성소리샘복지관 : 1일 평균 842명
 - ▶ 청음회관 : 1일 평균 649명
- 지원내용
 - ▶ 상담사례관리(사례발굴, 개입, 지원 등)
 - ▶ 기능관리(운동지각, 의사소통, 학습능력, 사회적응력 등)
 - ▶ 장애인가족지원
 - ▶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지원, 권익옹호, 직업적응 등 지원

○ 시설현황

- 수어통역센터

연번	시설명	소재지	정원	설치일자	운영자
1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 빌딩 3층	25	98.08.25.	사)한국농아인 협회 서울특별시협회
2	종로구 수어통역센터	종로구 종로5길 31, 2층	5	10. 1.19	
3	중구 수어통역센터	중구 퇴계로 20길 41-11, 2층	5	00.03.04	
4	용산구 수어통역센터	용산구 이태원로 27가길 42, 3층	5	07. 1.15	
5	성동구 수어통역센터	성동구 청계천로 516, 3층	5	01. 1.10	
6	광진구 수어통역센터	광진구 긴고랑로 72, 3층	5	12. 3. 7	
7	동대문구 수어통역센터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5층	5	09. 2.23	
8	중랑구 수어통역센터	중랑구 면목로 357, 5층	5	07. 1.22	
9	성북구 수어통역센터	성북구 아리랑로4길 22, 2층	6	05.10.27	
10	강북구 수어통역센터	강북구 한천로 131길7, 2층	5	05.11. 3	
11	도봉구 수어통역센터	도봉구 마들로 13길 153, 4층	6	07. 1.17	
12	노원구 수어통역센터	노원구 상계로23길 17, 2층	6	02. 5. 3	
13	은평구 수어통역센터	은평구 증산서길 82, 1층	5	08. 3.24	
14	서대문구 수어통역센터	서대문구 통일로 344, 무악청구아파트 상가 201동 B105호	5	13. 4. 1	
15	마포구 수어통역센터	마포구 월드컵북로 15안길 26 2층	5	11. 3. 1	
16	양천구 수어통역센터	양천구 신정중앙로 86, 대영빌딩 4층	6	10. 1.26	
17	강서구 수어통역센터	강서구 발산로40 서울시농수산물공사 419호	6	04. 3. 1	
18	구로구 수어통역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4층	5	05.10.24	
19	금천구 수어통역센터	금천구 시흥대로 147길 30-15, 2층	5	09. 2.23	
20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로 363, HY빌딩 4층	5	07. 1.18	
21	동작구 수어통역센터	동작구 만양로 3길 14, 3층	5	10. 1.21	
22	관악구 수어통역센터	관악구 쑥고개로 128 1층	5	02. 9.18	
23	서초구 수어통역센터	서초구 서운로 23길 17	4	05.10.31	
24	강남구 수어통역센터	강남구 학동로 343 강남포바빌딩 지하2층	5	05.11. 4	
25	송파구 수어통역센터	송파구 송파대로 460, 3층	5	07. 8.13	
26	강동구 수어통역센터	강동구 성내로22 청해빌딩 3층	5	12. 3.12	

- 수어전문교육원

시설명	대표자	직원수	운영법인	위치	비고
서울수화전문교육원	김정환	4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빌딩 5층	수화통역사 3 청각장애인 1

※ 교육장 7개소, 운영 과정 37개반

구분	강의내용	비고
제1교육장	입문반 오전/ 회화반 오후1시/ 회화반 저녁	5층(43.56㎡)
제2교육장	고급반 오전/수어토크 오후/ 입문반 오후/ 음성필기통역 저녁/ 수어통역반 저녁	5층(29.7㎡)
제3교육장	회화반 오전, 오후3시/ 고급반 오후/ 수어통역실습 오후,저녁/ 수어영상독해 저녁/ 수어토크 저녁/ 관용수어 저녁	5층(47.52㎡)
제4교육장	고급반 저녁	5층(28.25㎡)
제5교육장	수어영상독해 오전/ 수어트레이닝 오후월수, 오후화목/ 음성필기통역 오 후 수어통역 오후/ 입문 저녁	5층(53.85㎡)
제6교육장	수어트레이닝 저녁	5층(19.48㎡)
제7교육장	필기대비반(수어통역의기초, 청각장애인의이해, 한국어의 이해, 장애인복지) 오후/저녁, 실기대비반(모의시험반)	지하1층(240.4㎡)

- 농아인 쉼터 : 7개소(2개소 조성중)

-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 성북구, 양천구, 강동구(12월), 은평구(12월)
- 조성목적 : 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일반복지시설의 이용이 곤란하며, 수어통역 센터는 공간이 협소하여 센터 내 농아인을 위한 작은 복지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공간구성 : 여가 공간, 다목적 교육장, 식당 및 휴게실 등

-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3개소

시설명	개관	직원수	운영법인	위 치
서울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15.7.	12	사단)한국농아인협회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남가좌동)
소리샘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18.3.	5	사복)서울삼성원	동작구 양녕로30길 19-4(상도동)
청음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18.3.	3	사복)한국청각장애인 복지회	강남구 봉은사로50길 6(역삼1동)

- 청각장애인복지관 운영 : 3개소(시립 1, 법인 2)

시설명	개관	직원수	운영법인	위 치
시립청각장애인 복지관	'07.1.	26	사단)한국농아인협회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남가좌동)
소리샘복지관	'01.4.	5	사복)삼성농아원	동작구 양녕로30길 19-4(상도동)
청음회관	'85.5.	3	사복)한국청각장애인 복지회	강남구 봉은사로50길 6(역삼1동)